

제2022-031호



북경

2021년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 영향력이 큰 10대 판결 사례

북경사무소

현황

-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 연구소(上海知识产权研究所)는 최근 ‘2021년 중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 영향력이 큰 10대 사례(2021年中国新文娱十大影响力案例)’를 공표함

아래에서는 이번에 공표된 사례 중 저작권과 관계된 4개의 사례를 살펴봄

주요내용

- 1. 아이치이가 진르터우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연회공략’ 저작권 침해사건

베이징 아이치이과기회사(北京爱奇艺科技有限公司, 이하 ‘아이치이’)는 문제된 저작물 ‘연회공략’의 독점적 전송권을 가진 회사임. 아이치이는 “베이징 진르터우타오과기회사(北京字节跳动科技有限公司, 이하 ‘진르터우타오’)가 연회공략 방영 기간 동안 허락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iOS, 안드로이드 APP에서 정보추천기술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연회공략을 일부 화면을 편집해서 제작한 숏폼(이하 ‘문제의 숏폼’)을 공중에게 전송 및 추천했으며, 이로 인하여 아이치이에게 큰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함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보저장공간 및 정보추천기술제공자인 진르터우타오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영상(문제의 숏폼)을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는지(明知) 혹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应知)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합리적 조치(必要合理措施)를 취했는지 여부” 및 “진르터우타오가 정보추천기술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인 고의와 과실의 존재해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임

법원은 “진르터우타오는 문제된 저작권 침해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황(应知)’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제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가 ‘필요(必要)’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부담하며, 문제된 솟품을 업로드 한 이용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함. 또한 “진르터우타오가 알고리즘 추천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많은 트래픽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하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선언함

※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2018) 京0108民初49421号民事判决书

■ 2. 런런잉스자막팀 저작권 침해죄 사건

량용핑(梁永平)은 2018년부터 타인과 공동으로 ‘런런잉스자막팀(人人影视字幕组)’이라는 사이트 개설해 외국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영상콘텐츠에 자막을 넣은 후 중국 국내에서 스트리밍 방식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 조사결과 ‘런런잉스자막팀’사이트에는 불법영상물 32,824개가 존재했으며, 회원수는 약 683만에 달함.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받은 회원비와 업체의 광고비 등을 통하여 인민폐 약 1,200만 위안의 불법수익을 얻음

2021년 11월 22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공개심리를 열어 피고인 량용핑의 저작권 침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인민폐 150만 위안을 선고함. 또한 위법소득을 모두 국고로 귀속하고, 범죄에 이용된 재물을 몰수함

※ 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 (2021) 沪03刑初101号刑事判决书、上海市杨浦区人民法院 (2021) 沪0110刑初826号刑事判决书

■ 3. IPTV의 스포츠 경기 생방송 저작권 침해 사건

미구회사(咪咕公司)는 2019-2020년 중국 배구 슈퍼리그의 저작권자 신분으로 안후이 리엔통(安徽联通)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IPTV 플랫폼 상의 CCTV5+ 스포츠 경기 채널에서 허락 없이 공중에게 2019-2020년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경기 중 일부 경기영상을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함

피고 안후이 리엔통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문제의 스포츠 경기영상은 ‘저작물’이 아니며, 미구회사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않았다. 문제된 스포츠 경기 영상은 CCTV스포츠가 제작했고, CCTV신매체 플랫폼을 통하여 생방송 되고 있으며, 안후이 리엔통 IPTV 플랫폼은 CCTV신매체 플랫폼으로 피고는 단지 신호 전송 및 기술보장 등 기초 전신서비스만을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함

법원은 판결에서 원고 미구회사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여 안후이 리엔통회사로 하여금 원고 미구회사의 경제손실 30,000위안과 합리비용 10,00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 (2020) 沪0115民初51653号民事判决书, 上海知识产权法院 (2021) 沪73民终687号民事判决书

■ 4. ‘전량’과 ‘전량2’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원고 찬치런회사(传奇人公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300만 위안을 출자하여 영화 ‘전량’의 제작에 참여했으며, 전량의 서명권 등 정신적 권리(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20%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덩펑회사(登峰公司)가 원고의 허락 없이 ‘전량’을 개편하여 ‘전량2’을 제작했는데 이는 원고의 개편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개편한 작품의 명칭으로 ‘전량’을 사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명상품의 명칭이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피고는 침해행위 정지하고, 경제손실 1,000만 위안과 합리비용 2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2012년 8월 피고 덩평회사가 소외인 베이징 춘추회사(北京春秋公司), 베이징 군구예술센터(南京军区艺术中心)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联合投资合同书)’를 보면 3자는 영화 ‘전랑’ 관련 저작권, 서명권, 수익권을 공유함. 또한 각 투자자는 투자비율에 따라 해당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공유한다고 약정하고 있음. 동시에 기타 주체가 투자에 참여할 경우 취득한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서명권과 수익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전랑’에 대한 명칭이용 권한은 덩평회사가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012년 9월 원고 찬치런회사와 베이징 춘추회사가 체결한 ‘공동투자협약서’에는 공동 투자하여 영화 ‘전랑’을 촬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약정에는 찬치런회사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수익 20%와 서명권 만을 향유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전랑’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 찬치런회사는 ‘전랑’의 저작권자가 아니며, 그가 제출한 증거는 ‘전랑’ 명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함

※ 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 (2017)京0108民初19356号民事判决书

평가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현재 중국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 등 다양한 권리보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중국의 여러 사례 중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는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

출처

- 지식산권나점사(知识产权那点事)
- <https://mp.weixin.qq.com/s/hvut3kw5IJMOGvGNWnpaqA>